



통보

부록

본 2023 년 2 월 13 일자 통신문은 뉴질랜드 대표의 요청에 따라 회람한다.

제목: 선스크린(제품안전기준)법 최종조치 고시

부록 사유:	
[]	의견 마감일 변경 - 날짜:
[X]	통보 조치의 채택 - 날짜: 2022-03-01; 2021 년 선스크린(제품 안전 표준) 법안이 2022 년 3 월에 확정되었으며, 다음 링크에서 액세스할 수 있다: https://www.legislation.govt.nz/bill/member/2021/0011/latest/LMS461350.html
[]	통보 조치의 공표 - 날짜:
[X]	통보 조치의 시행 - 날짜: 2022-09-01
[X]	최종 조치 전문 확인 출처 ¹ : https://www.parliament.nz/en/pb/sc/reports/document/SCR_116106/sunscreen-product-safety-standard-bill https://www.legislation.govt.nz/bill/member/2021/0011/latest/LMS461350.html
[]	통보 조치의 철회 또는 취소 - 날짜: 조치가 재통보된 경우 관련 통보문 기호:
[]	변경된 통보 조치의 내용 또는 범위 및 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출처 ¹ : 새로운 의견 수렴 마감일 (해당될 경우):
[]	발행된 해석 지침 및 전문 조회 ¹ :
[]	기타:

¹ 최종 조치 및/또는 관련 지침 문서의 전문을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, PDF 첨부파일,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.

내용: 본 소급 고시는 2021년 선스크린(제품안전기준) 법안이 2022년 3월에 확정되어, G/TBT/N/NZL/108에 통보된 제안에 효력이 있음을 공지한다. 본 문서는 1986년 공정거래법 제 29조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거래되는 모든 선스크린 제품에 대한 필수제품안전표준을 규정하려는 목적을 보여준다. 이 법안은 2022년 9월에 발효되었다.

협의 문서의 제안에 다음과 같이 약간의 변경이 있다.

1. 상기 법률에서 참조하는 표준은 국제 표준과 더욱 일치시키기 위하여, AS/NZS 2604:2021 대신에 AS/NZS 2604:2012를 참조한다.
2. S(b)(ii)는 AS/NZS 2604:2021에서 스킨케어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를 반영하기 위해 '*스킨케어*로 표현되는 제품(a product that is represented as skin care)'이라고 한다. 이러한 변경은 혼란을 줄이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, 규정 준수를 위해 두 개의 표준을 모두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.
